

2021년 제6차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채용공고(재공고)

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8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정법인으로, 문화체육관광부 유관기관입니다. 우리 연합회에서는 문화예술회관의 균형발전과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 증진을 도모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문화예술회관 육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직원을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.

2021년 7월 28일
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장

1. 채용인원

채용형태	채용분야	인원	담당직무(예정)
기간제근로자	일반행정3	1명	· 홈페이지 운영 및 기획, 보안 등

2. 응시자격

구분	주요내용																										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학력, 성별, 지역 제한 없음 · 채용공고일 현재 20세 이상인 자 · 병역의무대상자는 병역必 또는 면제자 · 연합회 인사규정 제38조에 규정된 정년 만 60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· 연합회 인사규정 제13조(결격사유*)에 해당하지 않는 자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>결격사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·</td> <td>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</td> </tr> <tr> <td>·</td> <td>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</td> </tr> <tr> <td>·</td> <td>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</td> </tr> <tr> <td>·</td> <td>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</td> </tr> <tr> <td>·</td> <td>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</td> </tr> <tr> <td>·</td> <td>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,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</td> </tr> <tr> <td>·</td> <td>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</td> </tr> <tr> <td>·</td> <td>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</td> </tr> <tr> <td>·</td> <td>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</td> </tr> <tr> <td>·</td> <td>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</td> </tr> <tr> <td>·</td> <td>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</td> </tr> <tr> <td>·</td> <td>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결격사유		·	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	·	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	·	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	·	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	·	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	·	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,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	·	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	·	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	·	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	·	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	·	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·	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
결격사유																											
·	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																										
·	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																										
·	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																										
·	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																										
·	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																										
·	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,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																										
·	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																										
·	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																										
·	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																										
·	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																										
·	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																									
·	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																										
우대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홈페이지 및 전자결재시스템 운영·관리, 보안업무 수행 경력자 · 정보화, 전산, 보안업무 등 관련 교육 이수자 · 정보처리, 보안, 통계, 사무자동화 등 자격증 보유자 																										
취업지원 대상자 (국가유공자 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국가보훈대상자 가점 적용(각 전형별 가점 부여) · 취업지원대상자 여부는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 (보훈상담센터 1577-0606)으로 본인이 직접 확인 후 보훈처/보훈지청에서 발급한 증명서 제출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>취업지원 대상자 내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·</td> <td>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</td> </tr> <tr> <td>·</td> <td>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</td> </tr> <tr> <td>·</td> <td>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</td> </tr> <tr> <td>·</td> <td>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</td> </tr> <tr> <td>·</td> <td>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</td> </tr> <tr> <td>·</td> <td>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취업지원 대상자 내용		·	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	·	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	·	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	·	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	·	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	·	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												
취업지원 대상자 내용																											
·	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																										
·	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																										
·	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																										
·	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																										
·	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																										
·	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																										

3. 근무조건

채용분야	계약기간	내용	비고
일반행정1	채용 시 ~ 2021. 12. 31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연합회 보수 규정 적용 (경력 산정에 의해 보수 적용) · 사회보험(4대보험) 가입 · 선택적복지제도에 따른 복지비 지급 (배우자 및 동거부모 등 개인별로 상이) 	평가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2년까지 계약 연장 가능
근무처	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, 4층(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)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		

4. 전형절차 및 일정

전형절차		세부내용
서류전형	접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(접수기간) 2021. 7. 28.(수) ~ 8. 11.(수) 18:00까지 (15일간) · (접수방법) 우편접수(등기우편), 방문접수 - <u>마감일(2021. 8. 11.(수))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함</u> - 방문접수시간: 09:00 ~ 18:00 (평일 12:00 ~ 13:00, 토·일요일·공휴일 제외)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"> (주소) (우)06757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, 4층(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)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인사총무팀 앞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(접수서류)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출력하여 사용 - ①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- ② 채용 개인 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- ③ 국가유공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	전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(심사기준) 교육(20점), 자격(20점), 경력사항(20점), 자기소개서(40점) · (합격자 선정) 채용인원의 5배수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 선발 * 응시현황에 따라 합격자 선정 범위는 변경될 수 있음 · (합격자 발표) 2021. 8. 17.(화) ~ 8. 18.(수) 중
면접전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(면접일정) 2021. 8. 23.(월) ~ 8. 24.(화) 중 · (면접대상) 서류전형 합격자 · (심사기준) 업무이해도, 조직적응력 등에 대한 심층 면접 평가 · (합격자 선정) 면접전형 점수의 고득점자로 결정 * 각 분야별 최종합격자 1명, 예비합격자 1명 · (합격자 발표) 2021. 8. 24.(화) ~ 8. 25.(수) 중 	
임용예정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(임용예정일) 2021. 9. 1.(수) · 임용포기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순위(예비합격자)로 결정 	

* 각 전형 합격자는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하며,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
5. 제출서류

전형구분	제출서류
서류전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①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· ② 채용 개인 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· ③ 국가유공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
<p>면접전형 (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• ② 경력(재직) 증명서 각 1부(해당자에 한함) • ③ 교육이수증 및 자격증 사본 1부(해당자에 한함) •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(해당자에 한함)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<p><확인서 발급 방법> 국민건강보험공단(http://www.nhic.or.kr/) 접속 → 회원가입 → 「개인회원」 로그인 (금융인증서 필요) → 자격득실확인서 발급</p>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제출된 서류는 진위여부 확인용으로만 사용되며, 블라인드 채용으로 평가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* 제출 서류 미비 시, 면접전형에 응시할 수 없음
<p>최종합격자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① 채용신체검사서 1부 • ② 주민등록표등본 1부 (남성의 경우 병적사항 포함 발급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병적사항이 나오지 않는 경우(면제자 등) 병적증명서 제출

6. 유의사항

- 서류 제출 시 타 양식 및 양식이 변형된 입사지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.
- 편견이 개입되어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성별, 연령, 출신지역, 가족관계, 출신학교, 신체적 조건, 재산 등을 표기하거나, 응시한 사람을 식별 또는 암시하는 사항을 표시해서는 아니 되며, 블라인드 위반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연합회는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일체의 청탁을 받지 않으며, 청탁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에 응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, 임용 후라도 합격을 취소합니다.
-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이며, 제출된 서류가 위조·변조·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.
-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 발생 및 채용신체검사, 신원조회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한국어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비위면직자는 퇴직일로부터 5년간 연합회 지원을 제한합니다.
-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제출 서류 반환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 기준 14일 이내 가능합니다.(직접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반환)
- 기타 문의사항은 경영혁신본부 인사총무팀(02-3019-5831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